

예술품의 국제매매 계약시 주요 조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점에 관한 소고

— 조형물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me practice issues and main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sales contract
— Mainly sculptures sales contract —

임 성 철* Sung-Chul L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예술품국제매매계약서의 일반조항
작성시 유의점 |
| II. 국제물품매매계약서의 주요조항 | V. 결론 |
| III. 예술품국제매매계약서의 실질조항
작성시 유의점 |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은 오랜 역사를 두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가 있다. 이는 무역 실무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술품(조형물을 중심으로)의 국제간 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실질조항과 일반조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주제어> 예술품, 국제계약, 표준계약,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 저작권

*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겸임교수

I. 서론

무역에서 예술품은 유체물로 분류된다.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에 따르면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은 21부에 속하며, 제97류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율표에는 분류는 있지만 예술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되어있지 않다. 97류에 속하는 호들의 종류를 보았을 때 예술품은 회화,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 등을 예술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유체물만을 의미한다. 유체물 중에서 건축물은 선박으로 운송하여 사고 팔만한 물건이 아니다. 사진의 경우 시각적으로는 회화에 가장 근접하다 할 수 있겠지만 관세율표상으론 인쇄물에 불과하다.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예술품은 예술가가 그 기교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그림, 오리지널 판화, 조각 등에 한정된다.¹⁾ 예술품은 공장에서 복제해 생산하는 공산품과 같은 단순한 유체물이 아닌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예술품의 거래는 유체물 거래인 동시에 저작물을 거래하는 이중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술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제매매계약의 본질을 이해하여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작성해야 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자유의 원칙²⁾에 따라 당사자는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계약체결의 자유),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내용결정의 자유),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방식의 자유)(문화체육관광부, 2015).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다. 즉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합치시킴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할 수 없다. 동일 내용의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계약서 작성자의 능력에 따라 계약서의 완성도가 차이가 난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제계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나 실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계약서 작성에 따른 어려움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통상 단순한 유체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가 마련되어 있어 국제매매계약서 거래당사자들의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는 유체물의 국제매매계약시 필요한 조항들을

1) 초등생 내 딸이 그린 그림도 예술품일까?(2014), 「주간무역」, Available at (http://exportcenter.go.kr/common_board/weeklytrade/notice_read.jsp?curPage=2&num=22374&board_type=5)

2) 국내 법률용어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정리한 표준계약서이다.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는 주로 轉賣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특수한 상품의 특수한 조건은 배제되고 있고, 쉽게 대체가능한 물품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송희영, 2001).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 볼 때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를 단순 공산품과는 달리 저작물이라는 객체 특성을 가지는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도 유체물의 국제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므로 예술품 국제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국제매매계약서의 주요조항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품의 국제거래 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시하여 예술품 국제거래 실무자들의 계약서 작성에 일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제II장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다. 제III장과 제IV장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계약마다 조정이 요구되는 실질조항(specific provisions)과 계약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변경이 되지 않는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의 작성시 유의사항을 논한다.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논문들은 많았으나, 대부분 ICC 모델 국제물품매매계약서를 분석하는 연구들³⁾로 예술품의 국제거래계약서 작성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예술품 국제매매계약서 조항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분석도구로 삼아 연구하는 문헌 중심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3) Klotz(1998)은 “Critical Review of the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에서 ICC 모델 국제매매 계약서 조항 중에서 매도인에 의해 제공된 서류들의 체크리스트, 매도인의 책임의 제한, 분쟁해결, 서면증거, 물품명세, 검사증명서, 신용장, 지연인도, 인도불이행 및 구제, 물품 불일치, 당사자간 협조, 천재지변 조항에 대해 분석하여 실제 모델 계약서 사용에 혼란을 초래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세창(2001)은 “국제물품매매에 필요한 일반거래협정서와 계약서 내용에 관한 연구”에서 계약서 작성시 또는 청약과 승낙시 숙지해야할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오세창의 연구를 참고하여 예술품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그 예를 들고자 한다. 송희영(2001)은 “국제무역계약에 있어서 ICC 표준매매 Model에 관한 연구”에서 Model 국제매매계약의 필요성과 특징, 특약조항, 일반조항의 내용, 문제점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박남규(2002)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요 조항에 관한 연구”에서 계약서 작성시 검토사항과 조정이 가능한 주요 조항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진순환(2002)은 “ICC 모델국제매매계약에 관한 고찰”에서 모델 계약서의 특별조항과 일반조항의 각 조항들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박남규(2005)는 “영문국제물품매매계약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에서 ICC 모델 국제물품매매계약서의 구조와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문물품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점과 일반조항 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II. 국제물품매매계약서의 주요조항

1. 표준 국제매매계약서의 필요성

국제거래는 격지자간 거래라는 특징으로 인해 대금결제를 못받는 신용위험, 계약한 물품을 못받거나 상이한 물품을 받을 상업위험, 국가간 법과 제도의 상이로 인한 법률위험, 그 밖에 환율의 변동, 국가상황의 변화와 같은 비상위험 등에 더 크게 노출된다.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고 국제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표준적인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계약당사자 상호 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송희영, 2001).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ICC에서는 1997년 12월에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를 출판하였다.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는 서식의 교전(the battle of forms)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서식의 교전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서식을 사용하여 교환한 계약내용이 앞면의 주요거래조항은 일치하는 반면, 이면의 일반거래조항들이 불일치함으로써 누구의 서식이 유효한가에 대해 생긴 분쟁을 말한다(ICC, 2008).

계약당사자가 서식의 교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약서를 면밀하게 작성하는 것 외에, 공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전순환, 2002). 즉, ICC는 서식의 교전과 같은 실무현상을 회피하고 어느 한 당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양 당사자에게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박남규, 2005), 이것은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 표준적인 국제거래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로도 볼 수 있다.

2.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1)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구조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는 특정조항(specific conditions)과 일반조항(general condi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ICC 모델 물품매매계약서의 특정조항은 실무적으로 약식계약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계약서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이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대신할 수 있다(Jimenez, 2012).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통상 특정조항과 일반조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조항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특정조항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조항에 기재된 특정조항에 대한 모든 참조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관련 특정조항에 대한 참조 해석이 된다.⁴⁾

2)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주요조항

특정조항에는 매매물품(goods sold), 계약가격(contract price), 인도조항(delivery terms), 인도시기(time of delivery), 매수인에 의한 물품의 검사(inspection of the goods by buyer), 권리유보(retention of title), 지급조항(payment conditions), 서류(documents), 계약의 취소기일(cancellation date), 지연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delay), 상품의 불일치로 인한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for lack of conformity), 불일치한 물품을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where non conforming goods retained by the buyer), 제소기한(time-bar), 준거법(applicable law for questions not covered by CISG), 분쟁의 해결(resolution of disputes), 기타사항(other)의 16개 조항이 있다.

제A1조 매매물품은 물품의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는 란으로 매매당사자들은 카탈로그 등에 있는 정보를 기재하고 견본 등을 첨부함으로써 물품의 관한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제A2조 계약가격은 통화단위와 숫자와 문자로 금액을 표기한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제A3조 인도조항에는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Incoterms의 11가지 거래 조건 중에서 합의한 조건을 선택하거나 Incoterms 이외의 인도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박남규, 2002).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Incoterms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예술품의 국제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무역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Incoterms 조건을 선택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제A4조 인도시기는 매도인이 Incoterms의 A4(매도인의 인도의무)에 따라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일 또는 기간을 기재한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도 인도시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제A5조 매수인에 의한 물품의 검사는 선적 전 물품의 검사가 합의된 경우에 검사장소를 기재한다. 예술품 중 조형물의 경우 선적전 검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예술품

4)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 B편 제1조 제1항.

국제매매계약서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항이다.

제A6조는 소유권의 유보 여부를 기재하는 조항이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도 소유권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제A7조는 지급조항으로 청산계정(Open Account), 선지급(Payment in advance), 화환추심(Documentary Collection), 취소불능화환신용장(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기타의 지급조항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 예술품의 국제거래계약서에도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는 조항이다.

제A8조는 매도인이 제공할 서류를 기재하는 란이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도 매수인이 통관이나 송금 등을 위해 서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조항이다.

제A9조는 취소일자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일반조항의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물품이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취소일까지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취소의 통지를 함으로써 당해 계약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제A10조는 지연에 대한 책임 조항으로 일반조항의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도지연에 따른 예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을 기재한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도 예정손해배상조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A11조는 상품이 계약과 불일치 할 경우 계약가격의 몇 %를 초과하지 않은 입증된 손해(결과적 손해, 이익의상실 등을 포함)로 기재하거나 금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한다. 예술품 국제거래도 계약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한대로 예술품을 인도하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

제A12조는 불일치한 물품을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책임 제한을 나타내는 조항으로 일반조항 제11조 제6항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기재방법은 물품가격의 몇% 또는 금액을 명시한다. 예술품의 경우 계약과 다른 예술품이 인도될 경우에는 예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매수인이 불일치 예술품을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 조항은 예술품 국제거래계약서에는 활용성이 낮다.

제A13조는 제소기한으로 일반조항의 제11조 제8항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제소기한은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서 필수적인 조항으로 예술품 국제거래계약서에도 필요하다.

제A14조는 준거법 조항으로 CISG 대신 국내법을 매매계약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만 작성한다. 예술품 국제거래계약서도 분쟁 발생시 준거법이 중요하므로 준거법 조항은 필수적이다. 다만 준거법으로 CISG를 선택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제 A15조는 분쟁 해결 조항으로 중재 또는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거래 분쟁시 중재 또는 소송이 분쟁해결방법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으므로 예술품 국제거래에도 필요한 조항이다.

제 A16조는 기타조항으로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예술품 국제거래계약서 작성시 기타라는 제목으로 조항을 만들기보다는 예술품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을 특정 제목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

일반조항에는 총칙(general), 물품의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goods), 선적전 물품의 검사(inspection of the good before shipment), 가격(price), 지급조항(payment conditions), 연체지급의 이자(interest in case of delayed payment), 소유권의 유보(retention of title), 계약의 인도조항(contractual term of delivery), 서류(documents), 인도의 지연, 인도불이행 및 이에 따른 구제방법(late-delivery, non-delivery and remedies therefore), 물품의 불일치(non-conformity for the goods), 당사자간의 협조(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불가항력(force majeure), 분쟁의 해결(resolution of disputes)의 14개 조항이 있다. 이 중 특정조항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 참고할 만한 조항들은 제2조, 제12조, 제13조 등이다.

제2조는 물품의 특성으로 물품에 관한 정보와 사용에 관련한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계약의 조건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은 구매한 물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도면 등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도 취득하지 하지 못하며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의 독점적인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 소프트웨어나 도면 등의 재산권이 관여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려우나 예술품의 구체적 정보 및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과 관련해서 참고가 되는 조항이다.

제12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객 또는 제3자의 클레임이 발생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제조물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클레임을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당사자간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예술품의 경우도 저작권 위반에 대한 클레임이나 위작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당사자간 협조 조항은 필요하다.

제13조는 불가항력 조항으로 불가항력적 상황과 통지의무,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의 계약종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은 예술품 국제거래에도 필요한 조항이다.

Ⅲ. 예술품국제매매계약서의 실질조항 작성시 유의점

제3장에서는 ICC 모델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있는 조항들을 참고하여 예술품 국제매매 계약시 계약마다 그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조항들인 품질조항 및 수량조항, 가격조항, 지급조항, 인도조항 및 보험조항을 실질조항(specific provisions)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해 분석한다.

1. 품질조항 및 수량조항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에서 물품의 명세와 관련해서는 품질과 수량조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Chow and Schoenbaum, 2005).

일반 물품매매에서는 견본이나 상표, 국제규격, 설계도 등 다양한 품질기준이 존재한다. 예술품의 경우는 견본에 의한 품질기준은 의미가 없고 대부분 도면 혹은 사진을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명세서 매매를 한다.

품질조항은 “The Artwork shall be the same one as in the photograph attached to this agreement at Appendix 1.” 와 같이 작성한다.

또한 조형물의 경우 조형물의 제목, 재질, 크기, 무게 등을 명세한다. 조형물의 경우 기준에 만들어져 있는 작품을 분해하여 수입한 곳에 재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재질이나 크기 및 무게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크기나 무게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정확히 일치하기 어려우므로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물품매매계약에서 결제방식을 신용장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 벌크화물에 대해 양당사자가 허용범위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5%의 과부족이 자동 적용된다.⁵⁾ 예술품의 경우 신용장을 결제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신용장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술품을 일반 벌크화물과 같이 취급하여 5%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것은 예술품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과부족 허용범위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물품의 경우에는 과부족 용인약관에 의해 과부족 용인 범위내에서 수량이나 무게가 추가로 오거나 적게 오는 경우 결제금액에도 추가금을 주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예술품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크기나 무게보다 적게 왔다고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

5) 신용장통일규칙 제30조 제b항.

이므로 용인범위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가격조항

일반 물품의 경우 가격은 Incoterms 조항의 선택에 따라 당사자의 비용 부담이 나뉘게 된다. 예술품 국제거래 계약에서 Incoterms를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무역의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아 Incoterms를 완전하게 인지하고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일반 물품매매에서 사용하는 Incoterms를 사용하기보다는 합의한 가격을 기재하고 해당 가격에 포함시키는 항목과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어디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할 것인가는 조형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수인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부담으로 운송과 보험계약을 맺고 통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coterms로 따지면 E나 F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형물의 경우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수출지에서 완성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설치장소에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품으로 수입하여 수입지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녹다운(Knock-down)방식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자의 조립 숙련도와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경우 비싼 작품의 가치를 상실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또한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인 경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운송이나 보험비험 등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형물의 국제거래에서는 작가가 수입지의 설치장소에 설치까지 책임지도록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가격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조항은 “Pursuan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Buyer agrees to purchase the Artwork for the agreed upon total price of USD \$800,000. The total price includes the followings: preliminary site visit, consultation and design with structural engineer, crating of the work and shipping to Seoul, installation of the work on site with team from the USA. The total price does not include: preparation of the site in Seoul,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supporting structure for the work” 와 같이 작성한다.

3. 지급조항

지급조항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지급금액, 지급장소,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이다. 이 가운데 지급금액은 가격조항에서 기재하고 있고 지급장소는 관행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지이다. 따라서 지급조항에서 실제로 검토할 사항은 지급방식과 지급시기이다(오원석, 2012).

지급방식에는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에서 검토했듯이 청산계정, 송금, 화환추심,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은행보증서 등 다양한 대금결제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 선호하는 결제 방식은 송금방식이다.

조형물의 경우는 앞서 논했듯이 실제 설치지에 작가의 의도대로 완전히 설치되어야 가치를 손상받지 않는다. 추심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조형물의 부분품들을 발송한 후 그 증거자료인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첨부해서 은행을 통해 대금회수를 하는 방식이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조형물이 설치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⁶⁾

화환신용장의 경우도 추심과 같은 이유로 예술품 거래에서는 지급방법으로 선호되지 않는다. 또한 화환신용장의 경우 매수인이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해야 하는데 갤러리나 개인이 수출실적이나 담보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호되지 않는다.

송금방식은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매수인의 계좌 정보와 송장만으로 간단히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09).

그러나 송금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지급능력에 의심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Murray, Holloway and Timson-hunt, 2007). 즉 매도인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신용위험이 높다. 따라서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 현실적 주로 사용하는 송금방식을 사용할 때는 신용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여 지급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송금방식에서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통상 무역거래에서 지급시기는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분할지급이 있다. 이 중에서 국제거래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은 분할지급이다.⁷⁾ 분할지급은 선급금은 계약체결시, 중도금은 운송서류 수령시, 잔금은 설치 후 등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오원석, 박광서, 2015).

6) D/P의 경우에 해당되며, D/A의 경우에는 수출상이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결제방식이다.

7) 동시지급이 위험은 가장 낮으나 국제거래에서 동시지급은 사용하기 어렵다.

결제방식은 “USD \$200,000. (the “1stDeposit”) within 7 (seven) business days from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by both parties. The 2nd payment of the USD \$200,000 (the “2nd deposit”) within 10 (ten)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the Seller’s Artwork completion notification via e-mail with photos and an invoice to the Buyer. The final payment of the GBP USD \$400,000 (the “final payment”) within 7 (seven)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the successful Artwork installation on site.” 와 같이 작성한다.

4. 인도조항 및 보험조항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물품인도의무로 인도시기, 인도방법, 인도장소, 인도의 증빙서류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조형물의 경우 설치장소에 설치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작가의 의도에 맞는 작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도조항 약정시에는 설치장소를 명확히 하고 설치장소까지의 위험 및 보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

인도조항에 대해서는 “Delivery & Documents: The Seller shall arrange all transportation of the Artwork and ensure that the Artwork is delivered and successfully installed at the OOO, Address, South Korea on or before 15 July 2016 (the “Final Delivery and Installation Date”). The Seller shall also provide all shipping documents to the Buyer prior to the date of shipment.”와 같이 작성한다.

보험조항에 대해서는 “Insurance: The Seller agrees to keep the Artwork fully insured and shall bear any risk of loss and damage until the delivery and installation completion date of the Artwork at OOO, South Korea.”

IV. 예술품국제매매계약서의 일반조항 작성시 유의점

제4장에서는 ICC 모델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있는 조항들을 참고하여 예술품 국제매매 계약시 한번 정해 놓으면 그 후 계약에서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조항들인 소유권조항 및 저작권조항, 매도인의 서약조항, 계약해제조항, 손해배상예정조항, 잡칙조항(양도조항, 준거법조항, 분쟁해결조항)을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해 분석한다.

1. 소유권조항 및 저작권조항

일반적인 물품의 거래에서는 소유권을 양도할 때 그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예술품은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작가는 예술품에 대해 저작권은 갖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 조항은 일반 물품매매계약에서는 거의 규정하지 않는 조항으로 예술품의 거래라는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다. 즉 저작인격권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물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품을 매매하여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라도 예술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경우 무단으로 출판, 영상제작, 상품화 등을 할 경우 2차적 저작물⁸⁾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⁹⁾

소유권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는 “The Artist possesses title, ownership, full rights, and interests in the Artwork. Ownership of and original title to the Artwork shall pass to the Buyer at such time as the full payment of USD \$800,000 is received by the Seller.”와 같이 작성한다. 이와 같이 작성할 경우 모든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는 예술품의 소유권 및 권리가 매수인에게 있게 되므로 권리를 유보(retention)하는 효과도 있다.

저작권 조항은 “The Artist reserves all reproductio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claim statutory copyright, in the Work. The Artwork may not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Seller.”와 같이 작성한다.

2차적 저작물인 출판권에 대해서는 “With the ownership of the work, the Buyer acquires the right to its public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atalogues, newsletters, newspapers, textbooks, research papers, and magazines.”와 같이 작성해야 매수인이 해당 예술품에 대한 도록 등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을 수 있다.

8)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9) Available at (<http://www.theartro.kr/howto/howto.asp?idx=27>)

2. 매도인의 서약조항

매도인의 서약조항(Seller's Covenants)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통상 이 조항에는 작품에 대한 명세 및 작가의 프로필, 작품에 대한 권원 증명서, 매도인(작가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갤러리) 또는 작가의 유효한 여권 사본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

여기서 매도인 그리고/또는 작가의 여권을 요구하는 것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없는 당사자에 의한 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안해 낸 규정이다.

예술품의 국제거래를 하다보면 작가로부터 판매를 위임 받지 않은 갤러리가 일단 해외에 있는 매수인과 계약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작가와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작가의 문하생이나 조교들이 작가에게 언급도 없이 작가에게 위임받은 것처럼 계약을 하거나 작가인척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작가의 작품이 아닌 모조품이 인도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작가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작가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작가가 갤러리나 제자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작가가 해당 거래를 인지하고 작가가 작품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작가와 갤러리 혹은 판매 위임받은 자의 여권 사본을 받는 것이 좋다.

매도인의 서약조항은 “(1) Artwork Description and Artist Biography at the time of signing this contract.

(2) An original title certificate of the Artwork within 7 (seven) business days from the date the Seller receives the final payment of the USD \$800,000 (the “final payment”) from the Buyer.

(3) A copy of Seller’s Business Registration and a copy of Seller’s valid passport (front page) that shows Seller’s photo and his offici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this contract.”와 같이 작성한다.

3. 계약해제조항

계약해제조항(Termination)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조항이다. 계약해제가 되는 상황은 인도기일까지 인도 및 설치를 못하는 경우, 계약에 일치하지 않는 예술품이 인도되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계약해제조항은 “(1) The Buyer may terminate the Agreement immediately upon noti-

fication to the Seller if:

- a. the Artwork is not delivered and installed for any reason whatsoever (including force majeure) at 000, South Korea on or before 14 December 2010; or
- b. the Artwork does not conform to the Description pursuant to Article 1 hereof; or
- c. the Seller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2) The Seller may terminate the Agreement immediately upon notification to the Buyer if:

- a. the Buyer fails to pay USD \$200,000. (the “1st Deposit”) within 7 (seven) business days from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by both parties.
- b. the Buyer fails to pay the 2nd payment of the USD \$200,000(the “2nd Deposit”)within 10 (ten)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the Seller’s Artwork completion notification via e-mail with photos and an invoice to the Buyer.
- c. the Buyer fails to pay the final payment of the USD \$400,000(the “final payment”) within 7 (seven)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the successful Artwork installation on site at 000.”와 같이 작성한다.

4. 손해배상예정조항

계약시 한 당사자가 특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두는 손해배상예정조항(Bryan A. Garner, 2004)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정해진 기일에 하지 못하는 경우와 매도인이 정해진 인도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대금결제와 관련해서 정해진 기일에 결제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한 손해배상예정조항은 “If payment of any Payment Installment is not received in cleared funds in the Bank Account by the applicable Payment Deadline although the Seller completed the Artwork in accordance with 3.2 of this agreement by the completion due date, the Seller shall be entitled (without limitation to the Seller’s other accrued remedies) to charge the Purchaser interest thereon calculated on a daily basis (part of a day being treated as a whole day) at the rate of 8% (eight per cent) per annum from the Payment Deadline until the date of actual payment. If within a further ten(10) Business Days following service of such notice the outstanding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together with the accrued interest thereon is not received in full in cleared funds into the Bank Account,

the Seller shall be entitled (at the Seller's discretion) to serve a notice terminating this Agreement.”와 같이 작성한다.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조항은 “The Seller shall bear the liquidated damages for delay in delivery of 1% of price of delayed Artwork per week, with a maximum of 6% of price of delayed Artwork. This clause will be voided if the artworks i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 (1) and available for inspection in Seattle by the Buyer on or before 15 September 2016.”과 같이 작성한다.

5. 잡칙조항

잡칙조항(Miscellaneous)에는 당사자간에 해당 거래에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추가하면 된다. 잡칙조항에 약정할 수 있는 조건들에는 계약을 양도할 수 없게 하는 양도조항, 준거법조항, 분쟁해결조항, 서면통지조항, 완전합의조항 등이 있다.

양도조항은 “Assignment: Subcontracting. Neither this Agreement nor any duties or obligations hereunder shall be assigned, transferred, or subcontracted by parties.”와 같이 작성한다.

준거법조항은 “Governing law: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re to be construed and take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 물품의 경우 UN의 CISG를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술품을 거래하는 갤러리나 작가들의 경우에는 CISG 규정과 적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할지는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진다.

분쟁해결조항에는 분쟁발생시 소송이나 중재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 할 것을 약정한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중재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ICC에서도 추천하고 있는 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약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Arbitration: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nd its interpretation shall be settled in amicable way between both parties. If the Parti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within thirty (30) days, such dispute shall be finally and conclusive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such arbitrat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The cost of arbitration and both parties' legal fees shall be borne by the losing party.”

서면통지조항(Written Notification)은 계약기간 중 당사자간 연락을 위한 이메일 주소, 통신방법 등에 관한 조항이다. 서면통지조항은 “All written communication or any similar expression including termination notice shall be sent by e-mail. For these purposes, the Seller's email address shall be 000@000.com; and the Buyer's email address shall be (000@000.com and hill.advisor@gmail.com). At any time, the Seller or the Buyer may request that any or all written communication or similar expression be sent via commercial air express mail by FedEx, UPS, or DHL.”과 같이 작성한다.

완전합의조항(Entire Contract)은 계약성립 전까지의 당사자간 교섭내용은 본 계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This Agreement contains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d replaces any and all prior discussions, representations and understandings, whether oral or written. The Parties through their authorized agents have executed this contract on the dates set out below.”와 같이 작성한다.

V. 결 론

국제무역거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공산품과 같은 유체 물들의 거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거래가 되어 왔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 UN, WTO, OECD, ICC 등과 같은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국제규칙 및 모델 계약서 등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체물 중에서 조형물과 같은 예술품은 단순한 공산품과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 계약서들을 이용하여 국제매매계약을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에서 물품의 내역, 계약가격, 인도조건, 인도시기, 지급조건, 계약의 취소기일, 지연에 대한 책임, 상품 불일치로 인한 책임의 제한, 준거법, 분쟁해결 조항들은 예술품 국제매매계약에도 참고할 수 있는 조항들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예술품국제매매계약서의 실질조항 작성시 유의점을 논하였고, 제4장에서는 예술품국제매매계약서의 일반조항 작성시 유의점을 논했다.

예술품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우선 수량조항에서 정확한 크기

를 맞추기 어려우므로 과부족용인 약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조항에서는 Incoterms를 사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인도장소와 시기를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형물의 경우에는 설치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야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완성되기 때문에 가급적 매도인이 설치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인도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제조항에서는 현실적으로 송금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할지급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및 권리들이 매수인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작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저작권조항은 예술품의 독특한 성질을 반영한 조항으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명확히 이해하여 저작권의 어느 범위까지 양도할 것인지를 명확히 작성할 것과 예술품과 관련한 출판, 영상제작과 같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에 대해서도 계약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계약해제, 손해배상예정, 양도, 준거법, 분쟁해결, 완전합의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작성 예를 들었다.

아직까지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이 예술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실무자들과 본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술품의 국제거래계약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나 저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자가 예술품 국제매매 계약시 협상했던 실무경험과 실제 사용했던 계약서들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다보니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에서 논거가 부족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예술품의 국제매매계약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예술품의 특성, 무역거래에 대한 지식,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적 지식 등을 골고루 갖추어야 하는데, 논자의 지식과 필력 부족으로 본 논문에서는 조항들에 대한 개괄적 설명만 하고 각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계속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남규(200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요 조항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8권.
박남규(2005), “영문국제물품매매계약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

- 권 제1호, pp.221-229.
- 송희영(2000), “국제무역계약에 있어서 ICC 표준매매 Model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pp.2-5.
- 오세창(2001), “국제물품매매에 필요한 일반거래협정서와 계약서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3호.
- 전순환(2002), “ICC 모델국제매매계약에 관한 고찰”, 「창업정보학회지」, 제5권 제2호, pp.282-284.
- 문화체육관광부(2015),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문화체육관광부, pp.5-29.
- 오원석(2012), 「최신국제비즈니스계약」, 삼영사, p.67.
- 오원석, 박광서(2015), 「무역상무」, 삼영사(제3판), p.400.
- 한국원자력협력재단(2009), 「국제영문계약 매뉴얼」, 넥서스, p.195.
- Bryan A. Garner(2004), *Black's Law Dictionary*(8th ed.), Thomson&West, pp.949-950.
- Carole Murray, David Holloway and Daren Timson-hunt(2007), *Schmitthof's Export Trade* (11th ed.), Sweet & Maxwell Limited, p.162.
- Daniel C.K. Chow and Thomas J. Schoenbaum(2005),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Problems, Cases, and Materials*, New York: Aspen publishers, p.229.
- Guillermo C. Jimenez(2012), *ICC Guide to Export/Import Global Standards for International Trade* (4th ed), ICC publishing S.A, p.80.
- ICC(2008), *Guide to Export-Import Basic* (3rd ed.), ICC publishing S.A, p.87.
- James M. Klotz(1998), “Critical Review of the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International Contract Advisor*, Vol.4 No.2.
- (웹사이트)
- http://exportcenter.go.kr/common_board/weeklytrade/notice_read.jsp?curPage=2&num=22374&board_type=5
- <http://www.theartro.kr/howto/howto.asp?id=27>

A Study on some practice issues and main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sales contract – Mainly sculptures sales contract –

Sung-Chul Lim

Abstract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analysis of possible ICC model of international sale contract terms used in the international artwork trade. Based on this, the provisions proposed considering the specialtie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help practitioners draw up a contract of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In Chapter II, I reviewed the highlight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 In Chapter III, I discussed the issues that arise in creating specific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agreements. In Chapter IV, I discussed the issues in creating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agreements.

Quantity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sales contract should include the “more or less” clause.

And it should als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transfer in the copyright provisions.

Even if a buyer has been assigned the copyright of artworks from the artist, if the buyer modifies the artworks without permission, moral rights can be violated. In addition, even if a buyer has been assigned al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artists, if the buyer does not have the specific provisions, the buyer must keep in mind that the unauthorized publication of artworks, film production, merchandising, etc, may infringe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Key Words> Artworks, International Agreements, Standard Contracts,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Copyright